

[별표 32의2] <신설 2008.1.14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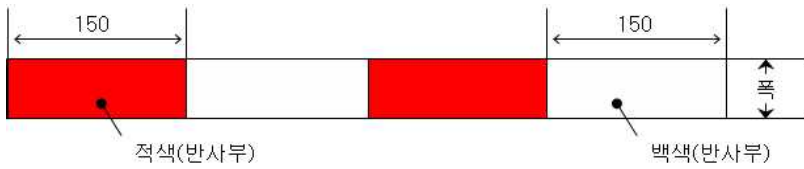
반사띠 및 특레적용 표시의 기준(제114조제10항 관련)

1. 반사띠

가. 반사성능(cd/lux·m²)

입사각	관측각(0.33도)		
	백 색	황 색	적 색
5R	450	300	120
30R	200	130	60
40R	90	75	30
60R	16	10	-

나. 규격 및 형상

부착 형식	반사띠의 규격 및 형상 (반사띠 폭 : 50mm ≤ 폭 ≤ 60mm)
형식 1	
형식 2	
형식 3	
형식 4	

다. 부착방법

- 1) 자동차의 형상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동차의 옆면에는 나목에서 정한 형식 1부터 형식 3 중 어느 하나, 뒷면에는 형식 1부터 형식 4 중 어느 하나의 반사띠를 연속하여 부착할 것
- 2) 반사띠의 부착범위는 대상 자동차의 길이 및 폭의 80퍼센트 이상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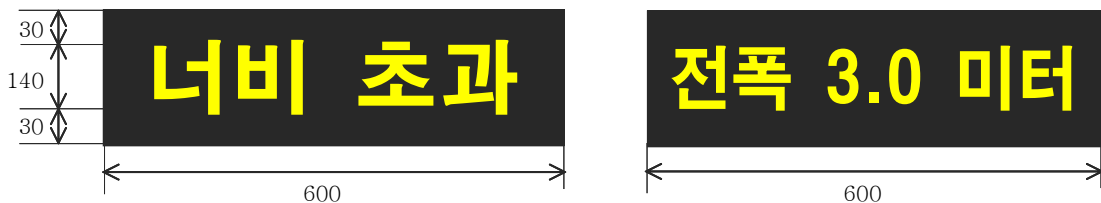
로 할 것. 다만, 콘테이너운송용 풀카고트럭의 부착범위는 적재함의 길이 및 폭의 8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.

- 3)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연속적인 반사띠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반사띠간의 거리는 가장 짧은 반사띠 길이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
- 4) 반사띠의 폭은 50밀리미터 이상, 60밀리미터 이하로 하고, 지상에서 250밀리미터 이상, 2,100밀리미터 미만의 높이에 부착할 것

2. 특례적용의 표시

가. 표시의 형식

1) 너비 초과시(예시)



2) 길이 초과시(예시)



3) 너비 및 길이 초과시(예시)



나. 표시방법

- 1) 규격은 가로 600밀리미터, 세로 200밀리미터로 하고, 문자는 가목의 예시를 참조하여 적절히 배치되도록 할 것
- 2) 바탕색은 검정색의 도료로, 문자는 황색의 반사지로 하며, 반사지의 반사성능은 황색 반사부의 반사띠와 같게 할 것
- 3) 자동차의 뒷면에 자동차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부착하되, 가목의 예시와 같이 좌측에는 "너비 초과" 우측에는 "전폭 3.0 미터" 등으로 표시할 것
- 4) 표시는 좌우가 동일한 높이로 할 것